

사 천 시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람	기 관 의 장

제662호 2020. 4. 29.(수)

조 례

- 사천시 조례 제1661호 사천시 청년 기본 조례 ----- 1
- 사천시 조례 제1662호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사천시 포상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 10
- 사천시 조례 제1663호 사천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 ----- 12
- 사천시 조례 제1664호 사천시 보행자 안전을 위한 횡단보도 안전시설 설치 조례 --- 15
- 사천시 조례 제1665호 사천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 ----- 17
- 사천시 조례 제1666호 사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 ----- 18
- 사천시 조례 제1667호 사천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21

규 칙

- 사천시 규칙 제736호 사천시 시세 기본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 25

회 람										
--------	--	--	--	--	--	--	--	--	--	--

사 천 시 공 보

제662호

사천시 조례 제1661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청년 기본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4월 29일

사 천 시 장 송 도 근

사천시 청년 기본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천시에서 거주·생활하고 있는 청년에게 다양한 분야에서 참여기회를 보장하고 자립기반 형성을 통해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다만,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등 관계 법령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에 따를 수 있다.
2. “청년정책”이란 정치·경제·사회·문화·복지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확대, 권익증진, 청년발전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662호

3. “청년단체”란 청년정책의 목적에 맞게 활동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청년활동”이란 청년정책의 목적에 맞게 활동하는 청년 및 청년단체의 다양한 활동을 말한다.
5. “청년시설”이란 청년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냄으로써 청년정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조성된 시설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정책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년정책과 관련 있는 지역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청년의 활동에 필요한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는 청년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① 시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고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

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복지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 확대
나. 청년의 고용촉진 및 일자리 질 향상

사 천 시 공 보

제662호

다. 청년의 능력개발 및 역량강화

라. 청년의 복지 및 생활안정

마. 청년 문화 활성화

바. 청년의 권리보호

3.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지원체계 및 재원 조달방안

4. 청년정책위원회 등 민·관 협력 체계 구성 및 운영

5.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 시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시행계획 수립·시행 등)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청년정책 연구 등) 시장은 이 조례의 목적에 맞는 청년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성별·연령 등을 고려한 청년의 고용·생활·교육·문화·여가 등에 대한 기초조사 및 청년정책 연구를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청년정책조정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사천시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

1. 청년정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시행계획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청년정책 시행을 위한 관련 사업 조정 및 관련 부서 간 협력에 관한 사항

사 천 시 공 보

제662호

4. 그 밖에 청년정책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기획, 문화, 교육, 경제, 복지 등의 관련 부서장 중 시장이 지명하는 5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청년을 5명 이상 포함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1. 청년단체에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청년정책과 관련된 학식과 전문성이 있는 사람
3. 청년 일자리 및 창업을 통해 공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사람
4. 청년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
5. 사천시의회 의원
6.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662호

제1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가 있는 경우
2.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경우
3.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을 경우
4. 건강 등 일신상의 이유로 스스로 해촉을 원할 경우
5. 그 밖에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해당 안전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안전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전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2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정기회의는 상·하반기 각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에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청년정책 관련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사 천 시 공 보

제662호

- 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⑤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청년정책네트워크) ① 시장은 시정활동에 청년의 참여를 독려하고 청년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성별·연령별·분야별 다양한 청년들로 구성된 청년정책네트워크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청년정책네트워크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청년의견 수렴 및 청년정책 제안
2. 청년문제의 발굴, 조사 및 개선방안 모색
3. 시행 중인 청년정책에 대한 의견제시 및 참여
4. 그 밖에 청년의 시정 참여 확대에 필요한 사항

③ 청년정책네트워크의 모집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하고, 청년정책네트워크에 참여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청년정책 사업) 시장은 청년정책을 시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년의 활동 지원 및 참여 확대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 가. 청년활동 활성화를 위한 교육·캠페인·프로그램 운영 등
 - 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사회 전반에 대한 청년의 참여, 학습 등 지원

사 천 시 공 보

제662호

다. 청년의 문화·예술·체육행사 등 지원

라. 그 밖에 청년의 활동 지원 및 참여 확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2. 청년의 능력 개발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취업애로 및 사회·경제·문화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역량개발

나. 창의적·전문적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지원

다. 인문소양, 지역사회 리더십 함양 등 청년활동 지원을 위한 교육 방안 마련 및 정보 제공

3. 청년의 고용 촉진 및 일자리 질 향상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직업역량 강화 및 취업지원 사업

나. 창업환경 개선과 안정적인 창업기반 조성을 위한 지원

다. 고용차별 해소와 개선을 위한 지원

4. 청년의 주거 안정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주거 정착을 위한 주택지원

나. 주거환경 개선 등 주거안정을 위한 지원

다.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상담 지원

5. 청년의 합리적 금융생활 지원을 위한 금융소비자 교육 및 상담 지원사업

6. 청년의 생활안정을 위해 생활불안정 요소 해소 등을 위한 지원 사업

사 천 시 공 보

제662호

7. 청년의 문화 활성화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창의적 청년문화 형성을 위한 청년 문화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원

나. 청년의 문화예술 향유기회 확대 및 문화 활동 장려

8. 청년의 권리 보호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청년의 권리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및 환경 조성

나. 청년의 권리에 대한 교육 및 홍보

9. 그 밖에 청년정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15조(청년시설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청년의 권익증진을 위한 청년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청년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년 관련단체·법인 및 기관 등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제16조(지원) ① 시장은 제14조에서 정한 사업을 추진하는 청년 또는 청년 관련 단체와 기관·법인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사천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17조(사업의 위탁) 시장은 청년정책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청년정책과 관련이 있는 법인·단체 등에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른다.

사 천 시 공 보

제662호

제18조(포상) 시장은 지역사회 발전 및 청년권의 증진에 공헌한 청년과 청년 관련 단체 등을 선발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662호

사천시 조례 제1662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사천시 포상조례 등 일괄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4월 29일

사 천 시 장 송 도 근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사천시 포상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제1조(「사천시 포상조례」의 개정) 「사천시 포상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호 중 “미풍양속의 순화양양에” 를 “미풍양속을 순화하고 드높이는데” 로 한다.

제2조(「사천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의 개정) 「사천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662호

제2조제8호 중 “미연에” 를 “미리” 로 한다.

제3조(「사천시 관리방조제 범위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사천시 관리방조제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3백만입방미터미만” 을 “3백만세제곱미터 미만” 으로 한다.

제4조(「사천시 고령 농·어업인 지원조례」의 개정) 「사천시 고령 농·어업 지원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호 중 “과수지주목” 을 “과수 버팀목” 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662호

사천시 조례 제1663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
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4월 29일

사 천 시 장 송 도 근

사천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

사천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를 제11조로 하고,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소유 재산의 평가방법) 영 제62조의2제2항제2호 각 목의 소유 재산 평
가는 「지방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부터 제4조까지를 따른
다.

제9조(선정 대리인 신청·통지 등) ① 시장은 대리인 없이 과세전적부심사청
구 또는 이의신청(이하 “청구 등”이라 한다)이 접수된 경우 그 청구 등 세
액이 1천만원 이하인 사건에 대하여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인 또는 이의신

사 천 시 공 보

제662호

청인(이하 “청구인 등” 이라 한다)에게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의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이하 “선정 대리인” 이라 한다) 제도를 안내하여야 한다.

②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제1항에 따라 선정 대리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의 신청서가 접수되면 법 제93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이 충족하는지 확인하고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지체 없이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 라 한다)에게 선정 대리인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도지사에게 선정 대리인을 추천받아 지정하고 법 제93조의2제2항에 따른 선정 대리인 신청 결과를 규칙에서 정한 서식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선정 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청구인 등의 불복청구서 등 관련 서류를 지체 없이 선정 대리인에게 전달하고 권리구제에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선정 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청구 또는 신청일자·불복청구인·대리인 지정일자·결정내용 등을 규칙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선정 대리인의 의무·우대 등) ① 선정 대리인은 임기가 종료되더라도 임기만료 전에 지정된 사건에 대한 대리 업무를 계속 수행하여야 한다.

② 선정 대리인은 불복대리 과정에서 알게 된 납세자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③ 시장은 선정 대리인 활동이 우수한 사람에게 표창을 하거나 각종 위원회

사 천 시 공 보

제662호

위원 위촉 시 우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변호사법」 제90조 및 제91조, 「공인회계사법」 제48조 또는 「세무사법」 제17조에 따라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2.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금품·향응을 제공받거나 청탁 또는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하는 등 그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부터 제2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④ 시장은 선정 대리인이 지식기부를 통해 불복업무를 대리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선정 대리인에게 실비변상적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선정대리인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에 따라 지정된 선정대리인은 이 조례에 따라 지정된 선정대리인으로 본다.

사 천 시 공 보

제662호

사천시 조례 제1664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보행자 안전을 위한 횡단보도 안전시설 설치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4월 29일

사 천 시 장 송 도 근

사천시 보행자 안전을 위한 횡단보도 안전시설 설치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행자의 편의와 공공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횡단보도”란 「도로교통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도로에 설치된 안전표지를 말한다.
2. “안전시설”이란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보행자는 물론 차량 등의 운전자에게 적절한 시각 정보를 제공하기 위

사 천 시 공 보

제662호

한 횡단보도 집중조명 등의 시설을 말한다.

제3조(계획의 수립·시행) ①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안전시설 설치·관리계획(이하 “보행안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횡단보도 보행자에 대한 안전실태와 개선되어야 할 사항을 조사하여 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수립하여야 하는 보행안전계획을 다른 교통 관련 계획에 반영하여 수립하였거나 수립할 경우에는 보행안전계획을 따로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안전시설의 설치 등)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안전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관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할 경찰서 등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② 이 조례에 따라 안전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교통사고 다발지역 및 사고 우려가 높은 곳에 우선하여 설치한다.

③ 안전시설은 도로의 종류·구조·형태 및 교통량, 주변환경 등을 고려하여 공해를 최소화하고 경제성을 고려하여 설치한다.

제5조(예산확보) 시장은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662호

사천시 조례 제1665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4월 29일

사 천 시 장 송 도 근

사천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

사천시 주택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택법」 제49조에 따라 사용검사를” 을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및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 으로 하고, 같은 항 제13호를 제14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방수공사(2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에 한정한다)

제14조제1호 단서 중 “제13호” 를 “제14호” 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경우 다만” 을 “경우. 다만” 으로, “제13호” 를 “제14호” 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662호

사천시 조례 제1666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4월 29일

사 천 시 장 송 도 근

사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

사천시 건축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662호

【별표 3】 <개정 2020.4.29.>

대지안의 공지 기준<제29조 관련>

1.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대상 건축물	띄어야 하는 거리
가. 당해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의 공장건축물은 제외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준공업지역 : 1.5미터 이상 · 준공업지역외의 지역 : 3미터 이상
나. 당해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창고(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에서의 창고건축물은 제외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준공업지역 : 1.5미터 이상 · 준 업지역외의 지역 : 3미터 이상
다. 당해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판매시설, 숙박시설 (여관 및 여인숙 제외),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 제외), 종교 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미터 이상
라. 공동주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파트 3미터 이상, · 연립주택 2미터 이상, · 다세대주택 1미터 이상
마. 의료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분노 및 쓰레기처리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방송통신시설, 발전시설, 묘지관련 시설, 장례식장, 노유자시설(경로당은 제외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미터 이상

사 천 시 공 보

제662호

2. 인접대지경계선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대상 건축물	띄어야 하는 거리
가. 전용주거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공동주택을 제외한다)	· 2미터 이상
나. 당해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전용공업지역 및 일반 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의 공장건축물은 제외한다)	· 준공업지역 : 2미터 이상 · 준공업지역 외의 지역 : 3미터
다. 당해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판매시설, 숙박시설(여관 및 여인숙 제외),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 제외) 및 종교시설. 다만, 상업지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을 제외한다.	· 3미터 이상
라. 공동주택 (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 아파트 5미터 : 이상 · 연립주택 : 2.5미터 이상 · 다세대주택 : 2미터 이상
마. 의료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가목부터 라목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군사 및 교정시설, 방송통신시설, 발전시설, 묘지관련시설, 장례식장, 노유자시설(경로당은 제외한다)	· 의료시설 : 4미터 이상(상업지역의 경우에는 2미터 이상) · 기 타 : 2미터 이상

비고

- 1) 2006년 5월 9일 이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의 수직증축 및 용도변경은 제외한다.
- 2) 제1호마목과 제2호 마목에 해당하는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중 법률 제12516호「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부칙 제9조의 기간 내에 무허가 축사를 적법화하는 경우 대지 공지 기준을 최소 0.5미터 이상은 띄어야 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662호

사천시 조례 제1667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4월 29일

사 천 시 장 송 도 근

사천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건강에 위해(危害)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 증진과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감염병”이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을 말한다.
2. “감염병환자”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감염병환자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그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며, 시민의 건강에 위해가

사 천 시 공 보

제662호

되는 감염병의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감염병 예방과 관리를 위한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고 감염병 발생 때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역학조사, 감염 전파의 차단 조치 등 위기 관리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감염병의 효율적 치료와 확산방지를 위하여 질병의 정보, 발생 및 전파 상황을 공유하고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및 의료인단체와 감염병의 발생 감시·예방을 위하여 관련정보를 공유하여야 한다.

제4조(시민의 권리와 의무) ① 시민은 감염병 발생 상황,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에 관한 정보와 대응방법을 알 권리가 있고, 시장은 신속하게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시민과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은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 ① 시장은 법 제7조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감염병 예방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감염병 예방·관리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주요 감염병 예방·관리에 관한 사업계획과 추진방법
3. 감염병 대비 의약품·장비 등의 비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감염병 전문인력의 양성 및 감염병 위기대응역량의 강화 방안

사 천 시 공 보

제662호

5. 감염병 발생 통계·정보의 분석 및 관리 방안
6. 감염병 관련 정보의 의료기관 간 공유 방안
7. 그 밖에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6조(감염병 예방사업) 시장은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방역대책
2. 감염병환자의 진료 및 보호
3.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계획의 수립 및 시행
4. 감염병에 관한 교육 및 홍보
5. 감염병에 관한 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6. 감염병에 관한 조사·연구
7. 감염병 예방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8. 감염병의 치료 및 예방을 위한 약품 등의 비축
9. 기후변화,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변동 요인에 따른 감염병 발생조사·연구 및 예방대책 수립
10.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의 구축과 운영
11. 해외 신종감염병의 국내 유입에 대비한 준비, 교육 및 훈련
12. 그 밖에 시장이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교육) ① 시장은 시민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감염병 예방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사 천 시 공 보

제662호

1. 손씻기 등 보건위생 기본수칙

2. 병문안 때 위생수칙

3. 감염병 발생 때 행동요령

4. 그 밖에 감염병 예방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기관 등을 대상으로 제1항에 따른 감염병 예방에 관한 교육을 권장하고 지원할 수 있다.

1.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2.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3.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4.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보건의료기관 및 공공보건의료기관

5.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제8조(홍보) ① 시장은 손씻기 등 감염병 예방 관련 홍보물 제작 배포, 현수막과 배너 설치 등을 통하여 올바른 감염병 예방 문화 정착을 위한 캠페인을 전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감염병 예방에 관한 정보를 대중매체와 시 및 관련 기관의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효과적인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지역 의사회·의료기관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포상) 시장은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개인·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662호

사천시 규칙 제736호

사천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시세 기본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4월 29일

사 천 시 장 송 도 근

사천시 시세 기본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사천시 시세 기본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선정 대리인 신청)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른 “사천시 선정 대리인 신청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제13조(선정 대리인 지정 통지)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른 “사천시 선정 대리인 신청 결과 통지”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제14조(선정 대리인 지정 사건 명세) 조례 제9조제6항에 따른 사천시 선정 대리인 신청 지정 사건의 기록·관리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사 천 시 공 보

제662호

별지 제7호서식의 우측하단 결재란 중 “담당” 을 “팀장” 으로 한다.
별지 제10호서식부터 제12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662호

[별지 제10호서식] <신설 2020.4.29.>

사천시 선정 대리인 지정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	-----	------	----

신청인 (청구인)	성 명	생 년 월 일
	주 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접수번호	통지된 사항 또는 처분의 내용(과세처분인 경우에는 연도, 기분, 세목 및 세액 등을 기재합니다)			
처분내용	연도	기분	세목	부과액

본인은 위 접수 건과 관련하여 대리인 지정 신청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함을 확인합니다.

1. 청구신청인(배우자 포함)의 종합소득금액이 5천만원 이하이고, 소유 재산의 가액이 5억원 이하일 것
2. 법인이 아니고 「지방세기본법」 제93조에 따른 대리인이 없을 것
3. 「지방세징수법」 제8조에 따른 출국금지 대상자 및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명단공개 대상자가 아닐 것
4.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의 금액이 1천만원 이하일 것
5.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및 레저세가 아닌 세목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일 것

「지방세기본법」 제9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사천시 선정 대리인의 지정을 신청하며, 사천시가 신청인의 위 신청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청구인)

(서명 또는 인)

사천시장 귀하

신청(신고)인 제출서류	1. 소득금액증명(본인 및 배우자의 종합소득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세무서장이 확인발급하는 서류) 다만 소득이 없는 경우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제출 2. 가족관계증명서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지방세징수법」 제8조에 따른 출국금지 대상자 및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명단공개 대상자 2. 소유 재산(배우자의 소유 재산 포함)의 가액	

210mm×297mm(백상지 80g/m²(재활용품))

사 천 시 공 보

제662호

[별지 제11호서식] <신설 2020.4.29.>

사 천 시

사천시 선정 대리인 신청 결과 통지

① 신청인 용

○ 신청인 : ○○○ 귀하

1. 사천시 선정 대리인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귀하가 '00.00.00. 제출한 「사천시 선정 대리인 지정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귀하는 (재산·소득 요건 미충족)의 사유로 사천시 선정 대리인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2. 사천시 선정 대리인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귀하가 '00.00.00. 제출한 「사천시 선정 대리인 지정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귀하의 신청내용이 적법한 것으로 판단되어 다음과 같이 사천시 선정 대리인을 지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1) 사천시 선정 대리인

성 명		자 격	
사 무 실			
연 락 처	(전화)		(휴대전화)

2) 문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과 ○○○(☎ -)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지정내역을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② 선정 대리인 용

○ 사천시 선정 대리인 : ○○○ 귀하

신청인 ○○○님이 '00.00.00. 제출한 「사천시 선정 대리인 지정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신청내용이 적법한 것으로 판단되어 다음과 같이 귀하를 사천시 선정 대리인으로 지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1) 지정 접수건(지정사건)

신 청 인(청구인)		접수(사건)번호	
과세기간·세목·청구세액		연 락 처	
주 소			

2) 문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과 ○○○(☎ -)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지정내역을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년 월 일

사 천 시 장

관인생략

